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+ 방역강화

(12.1. ~12.14.)

English

GO



질병관리청



코로나19

코로나19 현황	사회적 거리두기	지원정책	코로나19 알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확진자 이동경로 확진자 현황 주요집단사례 확진자 추세 부산시 상황보고 일자별 현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사용 캠페인 예방행동수칙 자가격리자 행동수칙 가족/동거인 행동수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합안내 기업지원시책 정부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인터넷 방역단 클린존 (방역안심시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지사항 코로나19 Q&A 마스크 의무화 Q&A 선별진료소 부산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 심리지원 홍보(서식) 다운로드

12월 1일 (Tue) 10시 발표



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.



대시민 호소문 전문(*20.11.30.)



코로나19 전국 현황 자세히 보기



사회적 거리두기

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2020.11.30.)

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+ 방역강화 (12.1. ~ 12.14.)

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중점관리시설 (9종)	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▲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' 실시
	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	▲ 집합금지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노래·음식 제공 금지
	노래연습장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▲ 초·중·고등학생 출입금지(추가 조치)
	실내 스탠딩 공연장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▲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	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50㎡ 이상)	▲ (식당)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, 테이블 간 거리두기 ▲ (카페)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 ▲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일반관리시설 (14종)	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	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
	실내체육시설	▲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격렬한 GX류 시설*에 대하여 집합금지(추가 조치) * 줌바, 태보, 스피닝, 에어로빅, 스텝, 킥복싱 등
	결혼식장 / 장례식장	▲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	목욕장업	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사우나·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(추가 조치)
	영화관 / 공연장	▲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▲ 좌석 한 칸 띄우기
	PC방	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▲ 초·중·고등학생 출입금지(추가 조치)
	오락실·멀티방 등	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	
	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▲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.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▲ 관악기·노래 등 비밀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은 금지(추가 조치) * 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, 다만 '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
	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1시 이후 운영 중단
	놀이공원·워터파크	▲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	아·미용업	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	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	▲ 마스크 착용 ▲ 환기·소독*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
국공립시설	▲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▲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	
사회복지시설	▲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	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실외라도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▲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·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 	
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▲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(추가 조치) 	
스포츠 관람	▲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인원 제한	
교통시설 이용	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	
등교	▲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는 2/3)	
종교활동	▲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 참여 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	
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 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	
기타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(추가 조치) ▲ 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(추가 조치) 	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행정명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도입(해운항만과-6207) : 8.19.~별도 해제시까지 ▲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(건강정책과-25023) : 8.25.~별도 해제시까지 ▲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(공고2020-321, 버스운영과) : 8.25.~별도 해제시까지 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~별도 해제시 까지 ▲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·다단계·후원방문판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고시(고시 제2020- 368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2020.9.23 ▲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(고시 제2020-39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0.11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(고시 제2020-433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6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 ▲ 모임 . 행사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56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24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69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26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79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30
위 반 시	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
대체 **역학조사관**이란게

뭐하는 사람이야?

코로나알리줌

역학조사관의
오해와 진실

동선 숨기고 자가 격리 거부?
확진시 3억원 청구?

구상권 청구
코로나 알리 줌

열나고... 기침도나는데
혹시 나도 독감? 코로나?



증상발현시 대처법

코로나 알리 줄

